##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주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207

발의연월일: 2020. 11. 11.

발 의 자:이주환·김기현·박덕흠

양금희 • 이달곤 • 이철규

임이자 • 전봉민 • 정동만

황보승희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고압가스 제조·저장·판매시설 등의 안전유지에 관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, 허가관청 등은 고압가스 관련 사업자 및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, 이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.

이에 허가관청 등이 고압가스 관련 사업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43조제1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4항"을 "제5항"으로 한다.

①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3조(과태료) <u>&lt;신 설&gt;</u>	제43조(과태료) ① 제11조제6항에
	따른 확인을 거부·방해 또는
	기피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
	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① ~ ④ (생 략)	<u>②</u> ~ <u>⑤</u> (현행 제1항부터 제4
	항까지와 같음)
<u>⑤</u> 제1항부터 <u>제4항</u> 까지의 규	<u>⑥</u> <u>제5항</u>
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	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	
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	
장이 부과·징수한다.	